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6-08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6 -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0누58719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시장

제 1 심 판 결 [redacted]법원 2020. 9. 15. 선고 2020구합10031 판결

변 론 종 결 2021. 3. 24.

판 결 선 고 2021. 4. 14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9. 12. 11. [redacted]시 B 답 3,306㎡에 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6-08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<수정하는 부분>

○ 제2면 11행 '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'를 '제1심 변론종결일까지'로 고치고 12행 다음에 '2020. 11. 5. 현재 체납액 합계는 31,610,310원이다.'를 추가한다.

○ 제3면 4행 '인정근거'에 '을 제5호증의 기재'를 추가한다.

○ 제4면 19행 '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합계 28,016,670원'을 '2020. 11. 5. 현재까지 31,610,310원'으로 고친다.

○ 제5면 마지막 행 '인정된다.' 다음에 '또한, 갑 제20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㎡당 개별공시지가는 피고의 압류등기가 있었던 2000년 32,300원에서 2019년 161,300원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 추세에 있으며, 피고의 압류등기에 선행하여 유효하게 존재하는 근저당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.'를 추가한다.

○ 제6면 13행 다음에 '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약 20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쉽지 않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.'를 추가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6-08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